



제 424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손해사정사 단일자격 통합〉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90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12.

다. 회 부 일 : 2025.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격사로서 보험회사 혹은 소비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하위 법령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나누게 되어, 현재 5차례의 변천을 거쳐 총 11종의 자격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한 이유로 감독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특히 물건이 훼손되는 사고와 신체가 다친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사고가 경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여러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생겨 업무처리 절차의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옴.

따라서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하위 법령에서 자격을 임의로 나누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손해사정사는 여타의 자격에 비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자격의 종류를 제한할 충분한 이유도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6조제2항).

주요내용

- 가. 무분별한 하위 법령의 자격 구분 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추가함.
- 나.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6조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손해사정사를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18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와 그에 기초한 사고피해액의 사정, 적정 보험금 산출 등 일련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문직업인을 의미함.

- 손해사정사는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신속·공정하게 조사·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현행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 현행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²⁾.

○ 「보험업법 시행규칙」(총리령)은 손해사정사의 종류를 재물, 차량, 신체,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³⁾하고 있음.

1)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장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2)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3)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

- 재물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책임·기술·권리보험 등에 대한 사정을,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 사정을, 신체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한 손해 사정을, 종합손해사정사는 재물·차량·신체 모두와 관련한 손해 사정을 업무 범위로 하고 있음.

○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은 재물·차량·신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합손해사정사는 위 세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 등록할 수 있음⁴⁾.

- 각 분야별 시험과목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세 분야가 유사하나 제2차 시험 과목은 각각의 전문 영역에 필요한 지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협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 4)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⑨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표 1] 현행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종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재물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 4) 영어	1)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2)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 회계원리
차량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1)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1)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2) 의학이론 / 3)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한편, 손해사정사 업무범위는 1977년 최초 도입된 이후 4차례 변화되어 왔음. 과거 1종부터 4종까지 종별로 구분하여 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재물, 신체, 차량, 종합 손해사정사로 자격제도를 변경하였음.

[표 2]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변천

1977년(도입)	1981년(1차 개정)	1991년(2차 개정)		2003년(3차 개정)		2011년(4차 개정) ⁹⁾
(기존)1종 (화재·특종)	(기존)1종 (화재·특종)	(기존)1종 (화재·특종)		1종 (화재·책임·기술 등)		재물
2종 (해상·항공·운수)	2종 (해상·항공·운수)	2종 (해상·항공·운수)		2종 (해상·항공·운수)		
(기존)3종 (자동차)	(기존)3종 (자동차)	3종 (자동차)	대인	3종 (자동차)	대인	신체
			대물차량		대물차량	차량
(기존)4종 (보증)	-	-		4종 (상해·질병·간병)		신체

주1: 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개정된 손해사정사 자격제도는 2014년부터 적용됨.

○ 이 과정에서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 자격을 유지하되, 개정된 자격에 해당하는 기존 자격을 모두 보유⁵⁾하고 있거나, 새로운 시험

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신규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⁶⁾. 그 결과 국내 손해사정사는 처음 도입 이후 4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현행 재물·신체·차량·종합 손해사정사 외에도 기존 종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2014년 자격제도 개정 전 존재하던 7종 및 개정 이후 신설된 4종을 포함하여 총 11종의 손해사정사 자격 종류가 존재하며, 개정 전 자격으로 등록된 인원은 총 8,319명, 개정 이후 새로운 자격으로 등록된 인원은 총 5,471명임(2024. 12. 31. 기준).

[표 3] 국내 손해사정사 등록 현황(2024. 12. 31. 기준)

구분		등록 현황(명)	비고
2014년 개정 전	(기존)1종	578	· 1977년 도입 → 2003년 개편
	1종	347	· 2003년 도입 → 2014년 개편
	2종	277	· 1977년 도입 → 2014년 개편
	(기존)3종	456	· 1977년 도입 → 1991년 개편
	3종 대인	2,876	· 1991년 도입 → 2014년 개편
	3종 대물·차량	2,762	· 1991년 도입 → 2014년 개편
	4종 ¹⁾	1,023	· 2003년 도입 → 2014년 개편
	소계	8,319	-
2014년 개정 후	재물	451	· 2014년 도입
	차량	1,181	
	신체	3,815	
	종합	24	
	소계	5,471	
합계		13,790	

주1: 1997년 도입되었다가 1987년 삭제된 기존 4종은 별도의 등록 인원 없음.

5) 1종과 2종을 모두 등록한 사람: 재물손해사정사, 3종 대물·차량을 등록한 사람: 차량손해사정사, 1종·3종대인·4종을 모두 등록한 사람: 신체손해사정사, 1~4종을 모두 등록한 사람: 종합손해사정사

6) 2014년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부칙(제3조)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개정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의 경우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시험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이 총 11종의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을 통합하여 단일 자격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손해사정사 자격 통합의 필요성, 기존 자격 취득자에 대한 통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손해사정사 자격 통합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을 고려할 때 자격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 손해사정사 자격이 통합될 경우 영역별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이 저하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 등이 각각 제시됨.

○ 구체적으로 자격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⁷⁾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⁸⁾으로 보험계약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⁹⁾되었으나, 일반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상황에서 분야별 손해사정사의 담당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격을 통합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7) 한국손해사정사회 의견임.

8) 2024. 2. 6. 개정 시행

9)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참고로, 2024년까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건수는 전체 손해사정 업무 처리 건수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표 4] 수행주체 별 손해사정 업무 현황

(단위 : 천건, %)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처리건수	비중	처리건수	비중	처리건수	비중	처리건수	비중
보험회사 고용		5,899	7.4	5,125	6.8	5,132	5.8	5,706	5.7
위탁	자회사	25,278	31.8	20,511	27.2	19,812	22.4	18,384	18.2
	비자회사	48,219	60.7	49,906	66.1	63,335	71.7	76,660	76.1
보험계약자 선임		0.086	0.0	0.142	0.0	0.553	0.0	1.174	0.0
합 계		79,396	100.0	75,543	100.0	88,280	100.0	100,752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반면, 담보별(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은 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이 영역별 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나, 개정안과 같이 자격제도를 통합할 경우 오히려 손해사정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¹⁰⁾도 있음.

- 대법원 판례¹¹⁾는 보험업법이 법률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각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손해의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보험

10) 금융위원회 의견임.

11) 대법원 2008두13637 2009. 6. 11.

사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의 종류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개정안과 같이 손해사정사 자격을 통합할 경우 기존 자격 소지자에 대한 통합 자격 편입 방안 및 통합 자격 시험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1~4종으로 구분되어있던 손해사정사 자격을 재물, 신체, 차량, 종합으로 변경한 2011년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서는 기존 자격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부칙에 따르면, 기존 자격 소지자가 개정된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 및 종전 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을 면제하였음¹²⁾.

1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총리령 제948호) 부칙

제3조(손해사정사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재물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른 자격에 맞는 기존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자격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¹³⁾.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별도의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 자격자에 대한 편입 방안을 결정하여 이를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등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격 통합 이후의 시험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¹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최근 5년 간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률은 15%~17%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와 제2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재물손해사정사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 차량손해사정사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신체손해사정사
4.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종합손해사정사

13) 예를 들어, 기존 1종 및 2종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게 하였음.

14) 금융위원회는 자격 통합에 따라 시험체계를 변경할 경우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수험생이 모든 분야 제2차 시험을 준비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표 5]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률

(단위: 명, %)

구분	2020년(43회)	2021년(44회)	2022년(45회)	2023년(46회)	2024년(47회)
접수인원(A)	4,388	4,218	4,296	4,372	4,549
응시인원(B)	3,070	2,945	2,992	3,179	3,270
합격인원(C)	465	504	500	503	507
합격률(B/C)	15.1	17.1	16.7	15.8	15.5

(자료: 금융위원회)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존 자격 소지자의 편입 및 통합 자격 시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